

<p>제3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2. 도시가스요금(다만,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 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,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제4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5. 기획예산실장, 행정관리국장, 보건복지국장, 산업경제국장, 시정기획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제3조 제2항 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 제2항 중 “계장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”로, 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, “중등교육국장”을 “중등교육업무 소관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9조 제2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32조 중 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, “문화행정계장”을 “문화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35조 제1항 중 “11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”을</p>	<p>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문화관광국장과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5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“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자체없이 각 학무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”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 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1조”를 “초·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2조”로 하고 “규정함”을 “정함”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) ① 서울특별시립 초·중·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한다.</p> <p>② 영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(학생수 60명 미만)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, 교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자격상실)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한 때</p> <p>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·퇴학한 때</p> <p>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</p>
--	--